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7
----------	------

제출년월일 : 2007.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안 제1조의2)
- 나.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의3)
- 다. 구청장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사실
을 확인한 때에는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함(안 제3조의2)
- 라.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노상·노외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1)
- 마.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
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준하
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함(안 별표1의 비고 제8호)
-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안 별표1의 비고 제16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7.2.16 ~ 2007.3.8)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전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0조의2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비용으로 3만원을 징수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으로 한다.

제5조중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를 “월·분기단위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하여

주차하는 자동차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차시간 단위)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1의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거주자우선주차차량

-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별표1의 비고 제8호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의 비고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하며,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1의 비고 제7호제가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호제나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다목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신 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을,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현행	개정안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전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1. ~ 10. (생략) ③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 산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구청장———— ———— ———— ————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 ———— ————

현행	개정안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u>법 제10조의2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6. (생략) 7. <u>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u>의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_____. 제3조(주차거부금지)_____ <u>법 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u>_____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_____ 「<u>도로교통법시행령</u>」 제89조_____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u> ④ <u>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u>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비용으로 3만원을 정수한다.</u>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u>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u> <u>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u> <u>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u>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1. (생략) 2.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u>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생략)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② (생략) ③ <u>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u>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 주택가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계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u>——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 —— —— —— —— —— 월·분기단위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단위

현행	개정안
있다.	_____.
제6조(노상주차장주차요금징수방법)	제6조(노상주차장주차요금징수방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1. 타시·도 등록자동차</u>	<u>〈삭제〉</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u>
	<u>규정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u>
	<u>의하여 주차하는 자동차</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카드의 판매) ① 제6조제1항	<u>〈삭제〉</u>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	
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제10조(주차장의 표지)①_____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_____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	_____
에 의한다.	_____.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제13조(주차시간 단위)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 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한다.</u>	<u>제13조(주차시간 단위)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u>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고) 1. ~ 7.(생략) 8. <u>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1~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u> <u>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	※ 거주자우선주차차량 -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비고) 1. ~ 7.(현행과 같음) 8. 「<u>자동차관리법</u>」----- -----<u>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u>-----. 〈단서삭제〉
〈신설〉	16.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제2조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u>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